

2026년 양감면 종합감사 결과



감 사 관

2026년 양감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6. 1. 12. ~ 1. 16. <5일간>
- 감사범위 : 2023. 1. 14. ~ 2026. 1. 16
- 감사인원 : 감사관 등 7명
- 감사분야 : 기관운영 업무전반
- 감사결과

○ 지적건수 : 총 21건

처분요구(건)				재정상 조치(원)				신분상 조치(명)		
계	주의	시정	통보	계	회수	추급	추징	계	주의	훈계
22	16	4	2	3,670,340	2,503,130	96,690	1,070,520	12	8	4

○ 모범사례 : 1건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

처분 번호	지 적 사 항	처분(요구)사항		
		처분 종류	재정상조치	
			방법	금액(원)
		22건	5건	3,670,340
계	지적건수: 21건	시정 4	회수 2	2,503,130
		통보 2	추급 1	96,690
		주의 16	추징 2	1,070,520
1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추급	54,130 96,690
2	주무관 1인 결재 처리 부적정	주의		
3	보안진단의 날 지연 및 미 실시	주의		
4	기초수급자 종량제 봉투 공급대장 기록물 관리 소홀	주의		
5	장애인등록증 폐기 지연	주의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소홀	주의		
7	도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누락	통보	추징	1,030,520
8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업무 소홀	통보		
9	회계관직 겸직금지 원칙 위반	주의		
10	세출예산 통계목 미준수	주의		
11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주의		
12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지연	주의		
13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4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기록관리 부적정	주의		
15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시정	추징	40,000
16	관내 농지 최초 취득 신청자에 대한 농지위원회 심의 미 실시	주의		
1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미게재	주의		
18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시정		
19	시설공사 공사감독 부적정	주의, 시정	회수	2,449,000
20	공사 일시정지 절차 부적정	주의		
21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미발주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처분번호	01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추급	재정상 조치금액	54,130원 96,690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정 요구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소속 직원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매월 행정지원과로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출근일수, 미인식내역, 정정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2. 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VI.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는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의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아울러,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감면은 매월 행정지원과에서 요청한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제출 시 위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휴가 등 개인별 실근무일수를 면밀히 확인 후 제출하여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양감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총 **건 중 *건 54,13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감액하지 않아 과다지급 되었고, *건 96,69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과소지급 되었다.

[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오지급 내역 “표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양감면에서는 향후 휴가 등 개인별 실근무일수를 면밀히 확인 후 제출하여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과다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54,1360원은 회수, 과소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96,690원은 추가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02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의 요구

제 목 주무관 1인 결재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개요

양감면에는 20**. *. **. “○○○○○○○○○○○○○○○○○○○○” 등 총 *건의 문서를 주무관이 1인 결재로 처리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결”이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의 단위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과 같고, 각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장·국장·소장·단장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 1인 결재 처리 부적정 내역 “표 생략”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앞으로 주무관이 전결권자의 결재 없이 1인 결재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03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의 요구

제 목 ‘보안진단의 날’ 지연 운영 및 미 실시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개요

양감면은 월례적으로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의 날’ 을 운영하고 있다.

2. 내용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르면 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 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보안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매월 보안진단의 날 실시 및 결과 제출 요구 공문을 양감면에 시달하였다.

따라서 양감면은 매월 정해진 날짜(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진단의 날’ 을 운영하여 재분류 검토 및 비밀소유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양감면은 아래 [표]와 같이 20**년 *월 ‘보안진단의 날’ 을 20**. *. **.에 실시한 후 20**. *. **.까지 행정지원과로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지난 20**. *. **. 에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였고, 20**년 *월 ‘보안진단의 날’ 은 미실시하여 총 *회의 ‘보안진단의 날’ 을 지연 운영 및 미실시하였다.

[표] ‘보안진단의 날’ 지연 및 미실시 현황 “표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양감면은 향후 보안진단의 날(매월 세 번째 수요일) 기한 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앞으로 “보안진단의 날” 을 지연 운영 및 미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분번호	04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기록물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에서는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소각용)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2. 내용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수수료감면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관할 읍·면·동으로 하여금 소각용 쓰레기봉투를 분기마다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읍·면·동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관리에 적합한 보존용 파일 및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감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을 작성하고 기록물 보존기간에 맞게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을 분실하여 수수료감면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 지급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기록물 현황 “표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양감면에서는 기록물 관리가 소홀하였음을 인정하며, 향후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기록물 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05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등록증 폐기 지연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장애인의 요청 시 장애인 등록증¹⁾(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신청·접수 및 교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등에는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할 때에는 새로

1) 장애인복지법상의 명칭은 ‘장애인등록증’이지만, 실제 장애인등록증에 ‘복지카드’라고 표기되어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복지카드’라 부름. 따라서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는 같은 의미임.

재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 교부 후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 이상 절단 폐기하여 불법사용을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감면에서는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 이상 절단 폐기하여 불법사용을 못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반납받은 총 **개의 장애인등록증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회수하는 즉시 폐기하지 않고 총 *회(*개월 ~ **개월 가량 취합)에 걸쳐 일괄 폐기한 사실이 있다.

[표] 장애인등록증 폐기 지연 현황 “표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양감면에서는 향후 장애인등록증을 지연하여 폐기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앞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지연하여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06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소홀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에서는 복지시설종사자, 지역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양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심의를 통해 사회보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내용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 및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감면에서는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소집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어야 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각 협의체는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심의사항, 심의결과, 그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감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회의 개최 안내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회의 개최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20**년 ~ 20**년 동안 개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의 회의록을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게 공개 및 비치하지 않았다.

[표] 양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표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양감면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안내 및 회의록 공개가 소홀하였음을 인정하며, 향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안내 기한을 준수하고 회의록은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 및 비치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7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1,030,520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통 보

제 목 도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누락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에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공유수면법’ 이라한다.)」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도로법」 제61조, 제66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²⁾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행정청 (도로법 제2조, 제23조)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공유수면³⁾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⁴⁾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에서는 [표]와 같이 ○○○ ****-*, ****-*번지의 수허가자인 ○○○(주)에게 20**년 ~ 20**년도 도로점용료 292,82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건, 759,220원의 도로점용료 부과를 누락하였고, ○○○ ****-*,번지의 수허가자 (주)○○○○○○에게 20**년 공유수면 점·사용료 271,300원의 부과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 도로 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미부과 내역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양감면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미 부과된 도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1,030,520원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당 미부과 내역을 만세구 안전건설과⁵⁾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3)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4)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5) 2026. 2. 1. 조직개편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규정 위임

처분번호	08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통 보

제 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 따르면 소매인이 담배소매업을 폐업하려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해서는 시장이 청문을 하여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감면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소매인의 사업자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소매인이 사업자 폐업을 하였음에도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성시 지역경제과(이하 “담당

부서” 라 한다)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담당부서에서 청문을 통해 그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 동안 양감면에서 정상영업으로 관리 중인 담배소매업소 **개소에 대한 사업자 폐업 여부를 국세청 홈텍스로 조회한 결과, [표]와 같이 “○○○○○○○○” 등 *개소가 감사일 현재⁶⁾ 기준 최소 ***일 ~ 최대 *,***일 전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였으나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아 소매인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양감면에서는 해당 사실을 담당부서에 통지하지 않아 청문 및 지정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해당 점포가 정상영업으로 관리됨에 따라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에게 담배소매인 간 거리제한이 부적절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필요 대상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양감면에서는 소매인 지정취소 대상을 담당부서에 통지하지 않는 등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 연찬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표]의 소매인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 소매인 현황을 만세구 경제교통과⁷⁾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통보)

6) 감사일 현재: 2026. 1. 12.

7) 2026. 2. 1. 조직개편으로 ‘담배판매에 관한 권한’ 구청 위임

처분번호	09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의 요구

제 목 회계관직 겸직금지 규정 위반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개요

양감면은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7조 및 「화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하지만, 지방회계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4조(법정대리) 제6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읍·면·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 또는 차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감면의 경우 재무관이 휴가 또는 병가 등으로 부재 시 대리자가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재무관과 지출원의 직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 처리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은 아래 [표]와 같이 재무관이 지출원을 겸직하거나 지출원이 재무관을 겸직하여 지출 업무를 수행(총 **건) 하였다.

[표] 회계관직 겸직금지 규정 위반 내역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양감면에서는 「지방회계법」 제23조 및 제36조에 따른 직무 겸직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과 지출원의 대직 지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재무관 및 지출원의 직무 구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회계관직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10	감사자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의요구

제 목 세출예산 통계목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은 20**년부터 20**년까지 사무관리비로 ‘○○○○○○○○○○’을 총 *건 (1,677,550원) 집행 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이 경우 주요 항목은 분야·부문·정책 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의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식비,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는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과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양감에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 해당 과목에 맞는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했고, 특히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관리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무관리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세부집행기준에 맞도록 집행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 ○○○○을 구입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집행(*건)하는 등 세출예산 통계목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세출예산 통계목 미준수 현황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양감면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통계목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향후 회계업무 처리 시 올바른 통계목으로 지출하여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11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은 「○○○ ***번지 일원 옹벽 설치공사」에 대하여 1인 견적제출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 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 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수의계약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표 1]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요내용				견적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4억 원이하	추정가격 2억 원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이하	추정가격 1억 원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 예외: 제6절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 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 합한 기업				
-이하생략-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부 발췌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감면은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1인 견적

제출 가능 금액 증명을 위한 확인서를 징구⁸⁾하여 그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은 아래의 [표 2]와 같이 기초금액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5천만 원 이하인 「○○○ ***번지 일원 옹벽 설치공사」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각종 확인서의 확인절차를 누락한 채 면밀한 검토 없이 1인 수의계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하였다.

[표 2]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내역 “표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양감면에서는 수의계약 시 여성기업확인서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였으며, 향후 계약 체결 전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향후 수의계약 진행 시 관련규정에 따라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체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8)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g.go.kr) 사이트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처분번호	12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지연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에서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상자로부터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검사를 할 때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준공검사 기간(14일)을 계산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르면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대가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⁹⁾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행정안전부 고시)」를 시행하였고,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였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르면 특례 적용 기간 내에는 계약대상자로부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아닌 7일 이내(필요시 3일 범위 내 연장)에 준공검

9)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또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 아닌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감면은 특례기간이 적용되는 2020년 7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 시 준공서류를 제출받고 해당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연장 사유가 없는 한 준공계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했고,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은 [표 1]와 같이 “○○ ○○○ ○○○○ ○○○○공사 시행” 등 사업의 총 *건의 사업에 대하여 준공계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준공검사를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하였고, [표 2]와 같이 총 *건의 사업에 대하여 대가지급을 *일 지연하였다.

[표 1] 준공검사 지연 현황 “표 생략”

[표 2] 대금지급 지연 현황 “표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양감면에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 ① 향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신고서 등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후 준공검사가 지연되거나 대금 청구 이후 대가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13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에서는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이하 “편람”이라고 한다.) IV.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의 위임했다는 표시로 날인(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 이름만 새긴 업무용 도장도 가능) 또는 서명(사인도

가능)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법정서식으로 원본이어야 하고, 위임장은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장은 인감 사고 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써 문서감정의 대상이 될 때가 많으므로 대리인에게 위임자 본인의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 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감면에서는 법 및 편람 등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 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그 기재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20**년 *월 ~ 20**년 *월까지 양감면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확인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위임자의 서명(날인)을 누락하는 등 총 *건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현황 “표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양감면에서는 향후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업무처리 시, 인감 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의 수기 기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임자의 서명 및 날인 누락이 되지 않게 꼼꼼히 검토 후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시 발급처리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14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기록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은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내 출생신고 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상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단순히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기로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기준지 확인이 끝난 자에 한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또는 주무” 10)가 직접 주민등록 번호 부여대장의 확인란에 날인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은 연도와 관계없이 350매를 기준으로 하여 1책으로 관리하고, 반드시 생년월일·성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며, 편철방법은 최근 연도 것이 위로, 오래된 것을 밑으로 편철하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발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출력일자:
페이지:

행정기관:
출력조건:

일련 번호	주민등록번호 구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 자)	세대주 성명	등 록 기 준 지 소	부여일자 및 사유	부여자	확인자 (주무·담당)

364mm × 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따라서 양감면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했다.

10) 「주민등록 사무편람」의 단축용어 일러두기에 따르면 담당 또는 주무는 주민등록업무 담당 6급 공무원을 뜻함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은 출생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확인자(주무·담당)”란에 날인 *건을 누락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매장마다 페이지번호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20**, 20**년도에 해당하는 대장의 페이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관리하였다.

관계기관(부서) 의견 양감면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해 숙지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 부여대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향후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기록관리 관련 업무처리 시 편철 및 기재사항 관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15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40,000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고 신청한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 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에 따르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지문 재등록 신청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명의 변경 및 지문정보 변경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이전증 반납 시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증 재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증 미반납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한편, ○○○ 등 8인은 성명변경, 분실, 지문재등록을 사유로 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양감면은 ○○○ 등 8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에 대하여는 수수료 5,000원을 각각 징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은 아래의 [표]와 같이 ○○○ 등 8인이 재발급 신청한 건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 대상임에도 40,000원을 미징수하였다.

[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내역 “표 생략”

관계기관(부서) 의견 양감면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해 숙지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시 과소 및 과대징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업무처리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과소 부과한 40,000원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16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관내 농지 최초 취득 신청자에 대한 농지위원회 심의 미 실시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에서는 「농지법」 및 「2023년 농지업무편람」(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023년 농지업무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에 따르면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편람에 따르면,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취득”이라 함은 관내 농지 소유유무 또는 소유이력과 관계없이 2022. 8. 18. 이후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양감면에서는 화성시 또는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안산시, 용인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여 2022. 8. 17. 이전을 기준으로 화성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이력이 있더라도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화성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총 *명(*건)의 최초 취득 신청자에 대하여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표] 농지위원회 심의 미 실시 현황(관내 농지 최초 취득 신청자)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양감면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처리 시 「농지법」 등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17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미게재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그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및 제28조의8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8조의8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 외 이용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역에 대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고시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등 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¹¹⁾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등 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 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등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감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등을 하였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했으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등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했다.

11) 목적 외 이용등을 한 날짜, 목적 외 이용등의 법적 근거, 목적 외 이용등의 목적, 목적 외 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대상기간 동안 양감면에서는 [표]와 같이 총 **개월분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등 내역을 미게재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등 대장을 기록 및 관리하지 않았다.

[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미게재 현황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양감면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앞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등 내역을 미게재하거나 관련 대장의 기록 및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처분번호	18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 개요

양감면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연가일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연가보상일수를 산출하여 市 회계과에 보고하였고, 회계과에서는 보고된 바에 따라 양감면 소속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아래 [표 1]과 같고,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휴직기간¹²⁾·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12) 육아휴직기간,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기간,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

[표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2023년 이전 기준)	재직기간	연가일수(2024년 이후 기준)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6년 이상	21일		

※ 복무규정 재구성

그리고 복무규정 제7조 제3항은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¹³⁾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미사용하거나 미보상 연가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표 1]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복무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는 해당 연도 중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일수 공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비고1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비고2 : 해당 연도 중 병가를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 여러 번 사용한 경우 사용한 병가 일수 또는 시간의 합이 15일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로 봄(45일 초과는 2개월)

※ 복무규정 및 예규 재구성

또한 미사용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13) 병가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휴직은 제외),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교육훈련 기간(1개월 이상인 경우) 등

따라서 양감면에서는 복무규정 및 예규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가산일수, 공제일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속 직원의 연가일수를 산정함으로써 연가보상비 지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명(*건)의 연가일수를 과다산정함으로써 연가 3일이 과다저축, 연가 3일이 과다사용 되었다.

[표 2]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내역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양감면에서는 해당 지적사항을 인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과다저축된 연가 3일은 현 연가저축일에서 삭제(삭제할 연가 저축일이 없는 경우에는 현년도 연가일수에서 공제), 과다사용된 연가 3일은 현년도 연가 일수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19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 수	재정상 조치금액	2,449,000원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공사감독 부적정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개요

양감면에서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재해 방지 등을 위하여 ‘○○○ ***-*번지 일원 농로 설치공사’ 등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건설공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지침 제11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62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7절제1항에 의하여 설계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장 제9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때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감면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설계도서,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한 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을 하며, 검사 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레미콘 소운반 미실시

‘○○○ ***-*번지 일원 농로설치공사’의 사업 설계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르면 농로를 설치하기 위해 현장 입구에서 레미콘을 소운반하여 타설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시공자는 현장 여건상 레미콘 소운반 없이도 레미콘 차량이 현장에 진입이 가능하여 콘크리트를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타설하였다.

그렇다면 감독자는 준공검사 전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실정보고 및 설계 변경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여 [표 1]과 같이 공사비 375,4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나. 기초잡석 포설 두께 변경

‘○○○ ***-#번지 일원 옹벽 설치공사’의 사업 설계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식생옹벽블럭을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옹벽블럭 기초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에 잡석을 30cm 포설하고 다짐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시공자는 터파기를 시행한 결과 기초 바닥이 견고하다고 판단하여 설계와 다르게 기초 잡석을 약 10cm 가량만 포설하고 다짐 후 바닥에 식생옹벽블럭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그렇다면 감독자는 준공검사 전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실정보고 및 설계 변경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여 [표 1]과 같이 공사비 356,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다. 조경석 부직포 및 뒷채움 미실시

‘○○○ ***-#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의 사업 설계서 및 계약내역서에 따르면 조경석 설치를 위하여 후면부에 부직포를 설치하고 뒷채움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시공자는 마을안길 측부에 조경석이 1단으로 낮게 설치되고 하중을 받지 않는 미관 용도 구조물로 판단하여 부직포 및 뒷채움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감독자는 준공검사 전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실정보고 및 설계 변경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여 [표 1]과 같이 공사비 200,25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1]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표 생략”

라. 교통안전처리시설 및 신호수 미정산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공사(○○○ ***-*번지 일원)’ 에서 통행안전 및 차량유도 등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안전처리시설(PE드럼 및 윙카)과 교통통제 비용(10일)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 시 공사작업 일지를 확인한 결과, 상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교통통제 신호수가 투입된 기간은 7일이었고 공사 중 교통 안전을 위한 PE드럼 및 윙카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감독자는 준공검사 전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한 실정보고 및 설계 변경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여 [표 2]와 같이 공사비 1,517,353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2] 교통안전처리시설 및 신호수 조정내역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양감면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 ① 공사감독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공사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지급한 공사대금 중 초과 지급한 2,449,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처분번호	20	감사자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일시정지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개요

양감면에서는 재해 예방 및 주민 편의 등을 목적으로 마을안길 포장, 우수관로 설치, 제방보수를 하기 위해 “○○○ ***번지 일원 옹벽설치공사” 등 *개의 공사를 계약하고 준공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6. 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및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9장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양감면에서는 *개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레미콘 수급이 지연된다는 사유로 일시정지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표 1]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재착공일을 예측할 수 없도록 ‘관급자재 수급가능일’ 까지 통보하는 등 공사 일시정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공사 일시정지 통보 내역 “표 생략”

관계기관 의견 양감면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처분번호	21	감사자			공 개 ()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처리할부서)	양감면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처분 종류 : 변상명령,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

화 성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미발주

관 계 기 관 양감면

내 용

1. 업무개요

양감면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 ○○○ ○○○ ○○○ 설치공사’ 대하여 공사비 ***,***천원(도급비 **,***천원, 관급비 **,***천원)에 20**. *. **. 계약 체결 후 20**. *. **. 공사를 착공하여 20**. **. *. 준공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 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 (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감독자(공사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편, 양감면에서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해 추진한 ○○○ ○○○○○○ ○○○ ○○○ 설치공사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업으로 착공일 전까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체결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양감면에서는 상기 공사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대상임에도 관련 법령을 미숙지하여 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근로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양감면에서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발주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으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양감면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IV 모범사례

양감면 「취약계층을 위한 양감면 빨래방」

□ 추진배경

- 양감면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로 인해 기본적인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며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세탁기 미보유 또는 노후화, 신체적 제약,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의류 세탁이 원활하지 않아 생활 위생 저하와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간 상호 돌봄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따뜻한 지역복지 실현에 기여함

□ 추진현황

- 추진기간 : 2023. 12. ~ 현재
- 추진장소 : 양감면 복지회관 (양감면 창말안길 12)
- 내 용
 - 취약계층의 생활 위생 개선과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해 세탁기 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대상자 수요 조사를 실시
 - 마을회관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시설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환경을 조성함

□ 기대효과

-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역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
- 무료 또는 저비용 세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 여건이 개선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복지 강화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